

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1. 7. 12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6월 28일 이천시장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01년 6월 28일
다. 상정일자 : 제48회 이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1차(2001. 7. 6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종화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(대통령 제17115호 2001. 1. 29일)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, 납부방법등에 관한사항을 계약시에 포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 예방코자 함(안 제4조)
- 최소분할면적 미달토지 및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처분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규정을 두어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(안 제6조제3항제2호)
-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부·매각대상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규정되어 외국이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국한하여 일치시키도록 함(안 제18조의3 제4호)

(제48회-제2차)

-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경감조항 신설(안 제22조제9항)
-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새로이 정함(안 제25조의2)
- 변상금 부과시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조항 신설(안 제28조의2)
- 국유재산관리계획과의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 매각의 규정을 명문화 함.(안 제38조 제5항 제3호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윤순성)

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후 자치법규상의 법령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안제4조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

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, 연간사용료, 납부방법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위탁관리 체제를 구체화 하고자 함.

○ 안제5조 제4항은

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,(1항~3항) 영제107조에서 동사항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 혜택을 받고 있어 그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○ 안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

안제6조제2항 제2호 제3호는 법령에서 신설(2000. 10. 20)되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제6조 제3항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 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등 법적제한이 없다면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설정으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심의에서 생략도록 함.

O 안제19조의 3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은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투자 유치를 한 경우만 적용토록 하였음.

O 안제21조 제4항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는 제1호내지 제4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 제1호내지 제4호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 하였으며, 동 규정에 연 3%내지 8%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(제5호)의 이자를 정하였음.

O 안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,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이상, 1000분의 25이상, 1000분의 10이상등으로 되어 있어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 있게 하였으며, 공장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여 제8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임.

O 안제22조의 2는 공장건설을 삭제함으로써 투자범위를 확대하는등 자귀를 수정하였음.

O 안제25조 제2항은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O 안제25조의 2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에 전세금 제도를 도입(2000. 10. 20)하여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여 개정하였음.

O 안제26조는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는 내용의 조문 정리를 하였음.

O 안제28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, 제7항의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를 하였음.

(제48회-제2차)

- 안제28조의 2 변상금의 사전통지등은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를 준용하여 개정 하였음.
- 안제38조 제5항 제3호의 중단의 개정은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으로 명문화하도록 하였음.
-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후 자치법규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용어정리를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